

조선후기 탄원서 작성과 修辭法 활용

－ 고문서학과 한문학의 연구 접점 시론 －

전 경 목*

- | | |
|---------------------|------------|
| 1. 서론 | 4. 외지부의 개입 |
| 2. 교재를 통해 본 수사법 | 5. 수사법 학습 |
| 3. 실제 탄원서를 통해 본 수사법 | 6. 결론 |

국문초록

현재 남아있는 탄원서를 살펴보면, 서당에서 이를 교육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18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양한 수사법을 동원해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그것인데 이는 한문 교육이 양반 이외의 다른 계층으로 점차 확산되고 또 권리나 소유에 대한 인식이 향촌사회까지 차츰 정착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실증하기 위해, 여러 학습교재와 실제 탄원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탄원인의 처지나 심정 등을 잘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어휘나 단어를 선택하고 무슨 수사 기법을 동원해 문장을 작성했는지 알아보겠다. 주로 표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를 본 논문에서는 ‘표현으로서의 수사법’이라 부르겠다. 이어서 탄원하려는 의도와 목적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ckmok@aks.ac.kr

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글 전체를 어떻게 구성했느냐를 고찰해보겠다. 탄원자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전략적으로 글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소송 전략으로서의 수사법’이라 칭하겠다.

아울러 조선시대에 수사법을 활용해서 원고나 피고를 돕거나 혹은 그들을 대신해서 소장을 작성해주는 사람을 外知部라 했는데 이들이 탄원서 작성에 개입한 흔적을 실제 탄원서에서 찾아보겠다. 이어 서당에서 어떤 수사기법을 학습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 주제어 _____

탄원서, 修辭法, 서당, 교재, 外知部, 비유, 환유, 起承轉結.

1. 서론

서당에서 탄원서를 교육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18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¹⁾ 대비와 대구는 물론 고사성어를 자주 인용하고 또 비유나 은유 혹은 환유 등 다양한 수사법을 동원해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흐름이 그것이다. 이처럼 탄원서에 수사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동향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조선후기 사회의 발전이나 추세에 맞추어 자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예정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한문 교육이 양반 이외의 다른 계층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였고 또 권리나 소유에 대한 인식이 향촌사회까지 차츰 정착되면서 그에 발맞추어 민원이 활발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근본 목적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관철하려면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탄원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조선시대의 수령이나 관리들은 대부분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 오랜 시간 학문을 연마했으며 관리가 된 후에도 시문을 비롯한 다양한 글을 쓰고 즐기며 이를 통해 소통하는 문학적 소양을 갖춘 관리들이었다. 물론 수령이나 관리 중에는 음관이나 무관 출신들도 적지 않았지만 이들도 기본적으로는 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민원을 담당하는 수령이나 관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득력 있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억울함이나 갈등이 비교적 손쉽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므로 탄원서 작성을 교육시키는 서당에서는 여러 유형의 탄원서를 읽고 쓰는 학습을 했을 것이며 그 과정 중에는 당연히 수사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서당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

1) 전경목, 「조선후기에 서당 학동들이 읽은 탄원서」, 『고문서연구』 48, 한국고문서학회, 2016; 「서당학동이 읽은 필사본 ‘用例集’의 내용과 특징」, 『한국고전연구』 3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조선후기 학동들의 탄원서 학습」, 『전북사학』 49, 전북사학회, 2016.

는 『隨聞錄』 등 여러 학습교재를 살펴보면, 수사적 표현이 가득한 탄원서가 상당히 실려 있으며 나아가 표현뿐만 아니라 논증의 기술 혹은 소송 전략을 보여주는 탄원서도 적지 않게 소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논증의 기술 혹은 소송 전략이라고 하면 마치 전문가가 펼치는 고도의 계략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선택하는 사소한 행동조차 일정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이루려는 수단이 바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동에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 탄원인이 어떠한 전략 아래 탄원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문헌은 매우 드물다. 때문에 연구자들은 탄원서를 살펴보면서 역으로 탄원인이 어떤 의도 혹은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밝혀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사법을 본고에서는 대략 두 가지로 구분해 고찰하려고 한다.²⁾ 우선 탄원인이 자신의 처지나 심정 등을 잘 표현하기 위해 어떠한 어휘나 단어를 선택하고 무슨 수사 기법을 동원해 문장을 작성했는가를 살펴보겠다. 한문학에서는 이처럼 낱말과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鍊字, 鍊句 및 行文이라 칭하는데³⁾ 주로 표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표현으로서의 수사법’이라 부르겠다.⁴⁾

이어서 탄원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단락을 배치하고 설득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글 전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성했는지를 알아보겠다.⁵⁾ 한문학에서는 이를 篇章의 구조라

2) 근래 서구의 학자들은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수사학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프리트요프 하프트 지음, 김성룡 옮김, 『법수사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참조.

3) 심경호, 「한문산문의 형식미」, 『개정증보판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117~174면, 참조.

4) 수사학에서는 이를 ‘문체의 수사학’이라 부르고 있다.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00, 13~33면, 참조.

5) 수사학에서는 이를 ‘논증의 수사학’이라 부르고 있다. 박성창, 위의 책, 13~33면,

고 하는데 탄원자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전략적으로 글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소송 전략으로서의 수사법’이라 칭하겠다.⁶⁾ 물론 이 둘은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탄원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먼저 탄원자가 목적과 전략을 결정한 후 그에 맞는 어휘와 단어를 선택하고 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⁷⁾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를 구분하고 교재와 탄원서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다.

한편 조선시대에 수사법을 활용해서 원고나 피고를 돕거나 혹은 그들을 대신해서 소장 작성을 해주는 사람을 外知部라 했다.⁸⁾ 그런데 이들은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진실을 감추거나 호도하기 위해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기만적인 언어를 구사해서 술수를 부린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탄원서 작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실제 탄원서를 살펴보면 틀림없이 이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실제의 탄원서에서 외지부가 탄원서 작성에 개입한 흔적을 찾아보고 끝으로 학습 교재를 통해 서당에서 어떤 수사 기법을 학습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2. 교재를 통해 본 수사법

1) 표현으로서의 수사법

조선후기 서당에서 탄원서 학습에 활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 용례

참조.

- 6) 심경호, 앞의 책, 117~174면, 참조.
- 7) 한문산문에 대한 수사적 연구에 대해서는 이현호, 「朝鮮後期『史記』批評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정우봉, 「한국 수사학사에 있어 “수사” 담론과 그 맥락」, 『민족문화연구』 4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등 참조.
- 8) 한상권, 「조선시대 소송과 외지부」, 『역사와 현실』 69, 한국역사연구회, 2008, 참조.

집'을 필자가 이미 소개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수문록』에 수록된 〈南原李班山訟狀〉이라는 탄원서를 살펴보자. 이는 전라도 남원에 사는 양반 이씨가 산송과 관련해서 제출한 탄원서로 이씨의 할아버지 묘소 바로 위에 누근가 몰래 무덤을 썼으나 오랫동안 파 옮기지 않아서 성묘할 때마다 차마 바로 볼 수 없었다. 이를 민망하게 여긴 그의 아버지가 투총 이장을 촉구하려는 뜻으로 무덤 주위를 파고 가시를 돌렸다. 그러자 조즙이라는 투장자가 나타나 도리어 가시를 두른 것이 불법이라며 관에 그의 아버지를 고발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씨는 아래의 탄원서를 제출해서 조즙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번호는 논의의 편의상 필자가 첨가한 것인데 이 점은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① 삼가 말씀드립니다. 趙楫이 儷塚을 비록 스스로 파냈지만 소송에서 진 것에 유감을 품고 기필코 증상모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가 투총에 **가시로 담장을 두르고 도랑을 파서 물을 부었다고 주장하며 감영과 고을에 무고했습니다.** 무덤 주위에 **솔가지 몇 개를 꽂았다고 울타리를 돌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잔디 몇 장을 떼어냈다고 도랑을 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산은 높고 계곡은 깊은데 물이 어떻게 산을 거슬러 올라가 투총에 물을 댈 수 있었습니까?**

② 제 할아버지의 묘소와 투총 사이의 거리가 비록 100여 步라 하지만 투총이 **높은 곳에 있으면서 제 할아버지의 묘소를 내려다보는 형국이 마치 집의 처마에서 층계 앞마당을 내려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 아버지가 성묘할 때 차마 바로 볼 수 없어서, 솔가지를 땅에 꽂아 투총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말라 꽃히지 않아 투총 계단 아래의 떼를 몇 장 뜨고 一字 형태로 솔가지를 꽂았는데 이것을 울타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③ 그런데 지금 **울타리라는 글자 위에 다시 에워쌌다는 말을 더해 무고하며 떼를 떠낸 곳을 도랑이라 일컫고 도랑이라는 글자 위에 팠다는 말을 더해 무고했는데,** 기왕 도랑을 팠다고 주장하려면 물이 있어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물을 부었다는 말을 더해 감영과 고을**

에 무고한 결과, 엄히 형벌을 가하고 문초하라는 처분을 얻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④ 제 아버지는 거의 70세가 다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묘살이를 6년 동안이나 해서 온 몸이 痰病에 걸렸으며 너무 슬퍼한 나머지 몸이 몹시 야위었습니다. 오랫동안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어서 기침과 천식이 심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목숨이 실낱같은 데다 刑杖까지 맞아 잠시 연명할 가망도 없습니다. 자식된 정리로 분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⑤ 밝으신 수령님께 올면서 하소연하오니 저 조즘의 간사한 모습을 환히 살피시고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잘 헤아리셔서 다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만일 술가지를 쫓고 때를 뜯는 것이 죄가 된다면 제가 아버지의 형벌을 대신 받아 늙은 아버지의 목숨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비록 제가 매질 아래 죽는다 하더라도 결초보은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니다.⁹⁾

위 탄원서에서 우선 주목되는 점은 이씨가 상대인 조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

9) <南原李班山訟狀>, 『隨聞錄』, 117~118면, “(有人僣窆其親而不知, 故環掘注水圍籬. 葬者始出掘去, 而山主反被嚴刑取招. 故以此狀白放矣.)” 右謹言. 趙楫之僣塚, 雖爲自掘是乎乃, 挾憾於落科, 而必欲中傷乃已. 以圍籬鑿渠注水等說, 瞞告營邑是乎矣. 插松數杖, 其可謂圍籬乎. 揭莎數片, 其可謂鑿渠乎. 山高谷深之地, 水何以逆行上山而注之於僣塚乎. 盖僣塚之於生之祖父山, 相距雖云百餘步, 而居高壓下, 正如屋簷之俯階庭, 則生之父, 墓省掃之際, 不忍正視, 欲插松枝, 以蔽僣塚之壓. 而土燥不能插, 故揭莎數片於僣塚之塔下, 一字形插松枝, 則謂之籬可也. 而今乃籬字上又添一圍字而誣之, 以揭莎處, 謂之渠, 而渠字上又添一鑿字而誣之. 既曰鑿渠, 則渠若有水, 亦爲可欺之方. 故又加注水二字而誣之於營邑, 至有嚴刑取招之題是乎所. 生之父非但年垂七耄, 廬墓六年, 冷痰纏身, 柴毀瘠骨矣. 久滯冷獄, 咳嗽添欲, 食飲不通, 氣息如縷, 而受此刑訊, 則晷刻難保. 人子情理, 不勝痛迫. 涕泣仰籲於神明孝理之下, 伏乞燭彼奸狀, 鑒此至冤, 更賜處分教是乎遣, 若以插松枝, 揭莎片爲罪, 則生當代父受刑, 以全老父之命, 則雖爲杖下之鬼, 猶結路上之草是白齊. 謹冒昧以達.”

실이다.¹⁰⁾ 그는 조즙의 주장이 크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어법과 나열법 및 대구법을 동원해서 “무덤 주위에 솔가지 몇 개를 꽂았다고 울타리를 둘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잔디 몇 장을 떼어냈다고 도랑을 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이어 조즙의 주장이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대조법과 반어법을 통해 “산은 높고 계곡은 깊은데 물이 어떻게 산을 거슬러 올라가 투총에 물을 덜 수 있겠습니까?”라고 역시 반문하고 있다. 그 후 조즙의 주장이 무고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점층법을 동원해 “울타리라는 글자 위에 다시 에워쥘다는 말을 더해 무고하고... 도랑이라는 글자 위에 팠다는 말을 더해 무고하며... 또 물을 부었다는 말을 더해... 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기 할아버지의 산소와 투총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법을 이용해 “투총이 높은 곳에 있으면서 제 할아버지의 묘소를 내려다보는 형국이 마치 집의 처마에서 층계 앞마당을 내려 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¹¹⁾ 자신의 아버지가 옥에 갇혀 혹독하게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열법을 동원해서 “오랫동안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어서 기침과 천식이 심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목숨이 실낱같은 데다 刑杖까지 맞아”라고 말하고 있다. 끝으로 대조법과 나열법을 활용해서 “저 조즙의 간사한 모습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잘 헤아리셔서” 처분을 해달라고 간청하고 만일 ‘솔가지를 꽂고 때를 뜯’ 것이 죄가 된다면 자신이 아버지 대신 처벌을 받겠다고 요청했다.

〈남원이반산송장〉에 나타난 표현으로서의 수사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10) 김옥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2, 참조.

11) 비유법을 한문학에서는 取喻法이라 하는데 오늘날의 비유법보다 훨씬 더 세분되어 있다. 그러나 비전공자들에게는 이러한 용어들이 생경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오늘날의 비유법 용어로 소개한다. 취유법에서 대해서는 李鍾麟, 『文章體法』, 普書館, 1913, 상 5~7면과 심경호, 앞의 책, 128~130면, 참조.

〈표 1〉 〈남원이반산송장〉에 나타나는 수사법

수사법	원 문
대조법	山高谷深, 燭彼奸狀 鑒此至冤
비유법	居高壓下 正如屋簷之俯階庭
점층법	籬字上又添一圍字而誣之, 渠字上又添一鑿字而誣之, 又加注水二字而誣之
대구법	插松數杖 其可謂圍籬乎 揭莎數片 其可謂鑿渠乎
나열법	圍籬鑿渠注水, 久滯冷獄 咳喘添飮 食飲不通 氣息如縷 而受此刑訊, 插松枝 揭莎片

표현으로서의 수사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같은 글자와 동일한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덤 주위에 솔가지 몇 개를 꽂았다고 울타리를 돌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잔디 몇 장을 떼어냈다고 도랑을 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插松數杖 其可謂圍籬乎 揭莎數片 其可謂鑿渠乎]?”라고 말하면서 ‘○○○○ 其可謂…乎’를 두 차례 반복하고 있다. 또 “울타리라는 글자 위에 다시 에워쌌다는 말을 더해 무고하고… 도랑이라는 글자 위에 팠다는 말을 더해 무고하며… 또 물을 부었다는 말을 더해… 무고했다[籬字上又添一圍字而誣之… 渠字上又添一鑿字而誣之… 又加注水二字而誣之].”고 주장하면서 ‘○字上又添一△字而誣之’를 두 차례 거듭 쓴 후 약간의 변화를 주어 ‘又加▽▽二字而誣之’로 끝을 맺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문장의 기세를 짝씩하게 하고 문장의 의미를 넓히는 수사법으로 알려져 있으나¹²⁾ 이곳에서는 상대편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수법으로 사용되었다.

2) 소송 전략으로서의 수사법

탄원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수사법은 단지 문장의 표현에만 국한되지 않

12) 한문학에서는 이를 ‘類字’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경호, 위의 책, 130~132면, 참조.

는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즉 소송 전략도 사실은 수사법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소송 중에는 누가 보아도 옳고 그름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발단이나 전개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옳고 그름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원고와 피고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축소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고 유리한 것은 힘주어 강조하거나 장황하게 소개하기 마련이다.

위 탄원서에서 이씨는 불리한 점을 축소하고 유리한 점을 매우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 탄원서가 수록되어 있는 『수문록』 편찬자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편찬자는 “몰래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묻은 사람이 있었으나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산주인이 묘 주위를 파 물을 붓고 가시로 에워싸자 비로소 투장자가 나타나 무덤을 파냈다. 그러나 산주인이 도리어 엄한 형벌을 받고 문초를 당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이 탄원서를 제출해 산주인이 결국 석방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³⁾

따라서 이씨는 위 탄원서에서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축소한 반면 6년 동안 시묘살이 한 행적이나 아버지를 대신해 처벌 받았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어 대를 이은 효행을 크게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⁴⁾ 이제 이씨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펼치기 위해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살펴보자. 그는 우선 탄원서를 5단락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이와 같이 단락을 나누어 글을 작성하는 것을 한문학에서는 편장구성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起·承·轉·結로 구분한다.

탄원서의 첫 단락(①)은 ‘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이씨는 조즙이 패소하자 감영과 고을에 무고했다는 점과 투충에 울타리를 두르고 도랑을 파 물을 부었다는 조즙의 주장에 의문을 제시했다. 탄원서 첫머리에서 조즙의 무고 경위를 사건의 순서에 따라 밝히고 아울러 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서

13) 有人偷窺其親而不知，故環掘注水圍籬。葬者始出掘去，而山主反被嚴刑取招。故以此狀白放矣。(앞의 주 9) 참조.

14) 전경목, 「조선후기 학동들의 탄원서 학습」, 『전북사학』 49, 전북사학회, 2016, 160~162면.

반박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順起’와 ‘問起’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②와 ③)은 ‘승’에 속한다. 이씨는 둘째 단락에서 자기 조상의 묘소를 위에서 내려 보는듯한 형국을 하고 있는 투총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가 부득이 하게 솔가지를 둘렀으나 조짐은 이를 과장해 울타리를 두르고 도랑을 파 물을 부었다고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셋째 단락에서는 자신이 이를 왜 무고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 단락(기)에서 제기한 의문점을 이어 받아서 상세히 설명하고 나아가 논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順承’과 ‘闡承’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¹⁶⁾

넷째 단락(④)은 ‘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씨는 화제를 돌려 자신의 아버지가 70세가 다 된 노인으로 6년간 여묘살이를 해서 宿病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아울러 무고를 당해 옥에 갇힌 이후 기침과 천식이 심하고 식사를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매까지 맞아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소연 했다. 논의의 전환을 통해 석방의 필요성을 긴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緊轉’ 방식을 차용했다고 판단된다.¹⁷⁾

끝으로 다섯째 단락(⑤)은 ‘결’로, 이씨는 수령에게 억울하게 무고당한 아버지의 사정을 살펴달라고 하소연하고 이어 자신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도록 해주면 결초보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이 형벌을 대신 받겠다고 자원함으로써 아버지의 석방을 거듭 강하게 간청하고 있다. 논의를 다시 한 차례 더 전환시키며 글을 맺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轉結’이라 할 수 있다.¹⁸⁾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15) 起法에 대해서는 심경호, 앞의 책, 143~147면, 참조.

16) 承法에 대해서는 심경호, 위의 책, 147~150면, 참조.

17) 轉法에 대해서는 심경호, 위의 책, 150~151면, 참조.

18) 結法에 대해서는 심경호, 위의 책, 151~152면, 참조.

〈표 2〉 〈남원이반산송장〉의 단락 구성

구분	기	승	전	결
단락	1	2·3	4	5
핵심내용	조즙의 무고 경위와 문제 제기	투총의 위치 설명과 조즙의 주장 반박	부친의 여묘살이 소개와 병환 언급	부친 석방과 代刑 요청
수사법	順起·問起	順承·闡承	緊轉	轉結

이씨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즉 자신의 아버지가 투장에 올라타를 두르고 도랑을 판 후 물을 부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투총의 위치와 정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즉 이씨는 대조법과 비유법 등 다양한 수사법을 동원해 선산의 山勢, 자기 조상의 묘소와 투총의 위치 등을 마치 실제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표현해서 이 탄원서를 읽는 수령에게 산송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 또 투장자의 무고 행위를 점층적으로 서술해서 투장자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나열법을 통해 옥에 갇힌 아버지의 병약하고 처량한 상태를 열거해서 수령으로 하여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일어나도록 했다. 끝으로 결초보은의 뜻을 지닌 ‘結路上之草’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수령의 인정에 호소해서 선처를 해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수령들은 대부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하지만 탄원서를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탄원자의 심정이나 처지에 동조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다. 이씨가 펼쳤던 전략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탄원서를 받아본 수령은 이씨의 아버지를 석방했다. 추측컨대 수령은 주인 몰래 묘를 쓴 조즙의 행위가 이씨 아버지의 불법 행위를 유발했으며 오랫동안 자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투장자의 잘못이 이씨 측보다 훨씬 무겁다고 판단한 듯하다.¹⁹⁾ 거기에 더해서 조즙이 이미 투총을 이장했고 이씨 아버지를 가둠으로서 처벌의 효

과도 충분히 거둔데다 이씨 아버지가 고령에 노환까지 앓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를 우려해서 서둘러 석방한 듯하다. 결과적으로 이씨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라 할 수 있다.

3. 실제 탄원서를 통해 본 수사법

1) 표현으로서의 수사법

이제 실제 탄원서에 나타난 수사법에 대해 살펴보자. 1770년(영조 46) 5월에 전라도 扶安縣에 살던 김생원의 사내종 齡南伊가 상전을 대신해서 전라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불행하게 거듭되는 喪禍로 남성 주인들이 모두 사망하여 그의 상전택에는 과부 밖에 없었는데 남원에 사는 이경창이란 사람이 이 기회를 틈타 노비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그의 상전택에서 소송에 대응할 만한 사람이 없자 엇남이는 할 수 없이 전주 감영에까지 가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엇남이가 감영에 제출한 <扶安金生員奴齡南伊>란 제목의 탄원서이다.

① 삼가 분하고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택은 여러 해 동안 喪禍가 거듭 일어나 **밖으로는 남정네가 없고 안으로는 과부만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데 주관할 사람이 없는 모습이 마치 곡식을 가득 실은 큰 배가 물 한가운데에서 키를 잃은 형세와 같습니다.

② 천만 뜻밖에 남원에 사는 李敬昌이라는 양반이 저의 상전택의 형세를 몰래 염탐하고서 30년 전에 저의 택에서 노비를 贖良시킬 때 그의 집 노비가 섞여 들어갔다는 것을 핑계로 남원부의 移文을 가지고 와서 本官[부안현]에 접수시키고서 공갈치기를 비상하게 합니다.

③ 그러나 저의 택에는 이 소송을 주관해서 대응할 사람이 없습니

19) 전경목, 앞의 논문, 162면.

다. 그렇지만 노비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면 이생원은 저의 덕에서 속량시킨 노비와 함께 같은 남원 고을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내력이나 뿌리에 대해 알지 못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의 덕에서 노비를 속량시킬 때에는 어찌 한 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또 30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섞여 들어갔다는 말로 번잡하게 소송을 제기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요? 이는 저희 덕이 상화를 당한 끝이어서 비록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 **동쪽을 가리켜 서쪽이라 해도 따질 사람이 없고 흰 것을 가리켜 검다고 해도 변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생원이 알고서 감히 비리로 제상전택 재산을 횡탈하려는 계책에 불과합니다. 말과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④ 한편 일의 잘잘못을 차치하고 지금은 **계절이 한여름이니 推奴 할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더욱이 길에는 돌림병이 가득해서 멀리까지 다니며 소송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해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 해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이생원이 한 장의 移文만 믿고 소송을 일으켜 저의 상전택이 낭패를 당할 근심을 면치 못하게 생겼습니다.

⑤ 그래서 사연을 갖추어 풍속을 관찰하고 새로운 정사를 펼치는 관찰사께 멀리서 와서 하소연합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살피어 시기가 아닐 때 추노를 금하도록 한 법률을 해아리시고, 비리로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엄정하고 분명한 처분을 내리셔서 橫侵당하거나 어지러이 싸우는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²⁰⁾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扶安金生員奴隸南伊〉, 『扶安金氏愚潘古文書』, 114면, 소지 № 62, “右謹陳憤愧情由段, 奴矣宅, 數年以來, 喪禍荐臻, **外無男丁, 內有寡婦. 家間事爲無所幹蠱. 有若萬斛龍驤, 中流失舵之勢.** 而千萬慮不到之南原居李敬昌兩班, 暗探奴矣宅形勢, 稱以其矣奴婢, 混入於矣宅三十年前贖給奴婢中是如, 持南原官移文, 來付本官, 恐渴非常. 矣宅既無幹事應訟之人勞不喻, 以奴婢曲直而言之, 李生員與矣宅贖給奴婢, 居在南原一鄉, 其來歷根因, 不爲不知, 則當初自矣宅贖給之際, 何無一言是跡, 又過三十年後而寂然無聞是如可, 今乃以混入之說, 紛訴起鬧, 抑何故歟. 此不過李生員知矣宅喪禍之餘, 雖有非理之人, 指

엇남이는 위 탄원서에서 대조법과 대구법 및 비유법 등을 적절히 사용해서 자기 상전택의 곤궁하고 삭막한 처지와 이생원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 등을 상세히 드러내고 있다. “밖으로는 남정네가 없고 안으로는 과부만 있다.” 든가 “동쪽을 가리켜 서쪽이라 해도 따질 사람이 없고 흰 것을 가리켜 검다고 해도 변별할 사람이 없다.”는 대조법과 나열법을, “집안일을 하는데 주관할 사람이 없는 모습이 마치 곡식을 가득 실은 큰 배가 물 한가운데에서 키를 잃은 형세와 같습니다.”는 비유법을 통해 그의 상전택의 失勢한 처지를 실감나도록 생생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또 “계절이 한여름이니 推奴할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더욱이 길에는 돌림병이 가득해서 멀리까지 다니며 소송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와 “시기가 아닐 때 추노를 금하도록 한 법률을 헤아리시고 비리로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등은 나열법 혹은 대구법 및 점층법 등을 활용해 이생원이 비리로 호송하는 모습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 탄원서에 보이는 표현으로서의 수사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부안김생원노엇남이>에 나타나는 수사법

수사법	원 문
대조법·나열법	外無男丁 內有寡婦, 指東謂西 無可質之 指白爲黑 無可辨之
대구법·나열법·점층법	序屬三夏 殊非推奴之時也 路滿癘疫 又非遠爭之日也, 揆以非時推奴之律 據以非理好訟之法
비유법	家間事爲無所幹蠱 有若萬斛龍驤 中流失挖之勢

東謂西, 無可質之, 指白爲黑, 無可辨之之勢, 而敢生非理, 以爲橫奪之計者也. 言念及此, 豈不痛哉. 然而事之曲直姑舍, 是而序屬三夏, 殊非推奴之時也. 路滿癘疫, 又非遠爭之日也. 差過數月□□起訟, 以辨曲直, 未爲不可. 而李生員恃其一丈移文, 至於相迫之境, 使矣宅未免顛沛之患. 故敢此具由遠訴於觀風新政之下, 伏乞另加洞燭, 揆以非時推奴之律, 據以非理好訟之法, 嚴明題下, 俾無橫侵紛爭之弊爲白只爲.」……巡使道主 處分.」庚寅五月日議送.」(題辭) 此非推奴之時, 查問(實의 誤: 인용자註)嚴處向事. □(隻: 인용자보충)在官十三.」兼使[押]

표현 이외에도 수사법 측면에서 위 탄원서를 살펴보면, 같은 글자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 점도 주목된다. “동쪽을 가리켜 서쪽이라 해도 따질 사람이 없고 흰 것을 가리켜 검다고 해도 변별할 사람이 없다[指東謂西 無可質之 指白爲黑 無可辨之]”에서 ‘指…謂… 無可…之’ 문형을 반복하면서도 같은 뜻의 ‘質’자를 ‘辨’자로 바꾸고 있다. 또 “계절이 한여름이니 推奴할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더욱이 길에는 돌림병이 가득해서 멀리까지 다니며 소송을 벌일 때도 아닙니다[序屬三夏 殊非推奴之時也 路滿癘疫 又非遠爭之日也]”에서 ‘○○○○ …非…之…也’의 형태를 거듭하면서도 ‘殊’를 ‘又’로 ‘時’를 ‘日’로 바꾸어 지루하거나 단순함을 지양하고 있다. “시기가 아닐 때 추노를 금하도록 한 법률을 해아리시고 비리로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에 근거해서[揆以非時推奴之律 據以非理好訟之法]”라는 구절도 ‘…以非…之…’의 문형을 되풀이하면서도 ‘揆’를 ‘據’로 ‘律’을 ‘法’으로 변화시켜 강조와 새로움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준 것은 수사법에서 같은 글자를 단순히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²¹⁾

2) 소송 전략으로서의 수사법

앞의 <남원이반산송장>과는 달리, 엇남이가 어떠한 소송 전략을 펼쳤는지 알려주는 문헌이 없기 때문에 직접 탄원서를 단락별로 읽어 그것을 찾아내야만 한다. <부안김생원노엇남이>는 모두 5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단락(①)과 둘째 단락(②)은 ‘기’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엇남이는 종손이 잇달아 사망해서 과부만 있던 상전택의 상황과 이경창의 근거 없는 횡포에 대해 언급했다. 상전택의 淒然한 상황과 횡포에 가까운 이경창의 주장을 나란히 대비함으로써 처음부터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글 첫머리에 두 가지의 상황이나 주장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排起’에 속한

21) 이를 ‘變文避複’이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경호, 앞의 책, 98~99면, 참조.

다고 할 수 있다.²²⁾

셋째 단락(③)은 ‘승’으로 이경창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이다. 엇남이는 그의 상전택에서 노비를 속량할 때, 같은 고을에 살던 이경창이 자신의 노비가 거기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과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첫 번째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러한 사실에 대해 30년이 지나도록 아무 언급도 하지 않다가 하필이면 가장이 죽고 과부만 남아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다음으로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문 제기를 통해 감사가 이경창에 대한 의혹 즉 과부만 남아있는 기회를 틈타 타인의 재산을 횡탈하려는 음흉한 계책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도록 하려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가설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반박한다는 점에서 ‘反承’이라 할 수 있다.²³⁾

넷째 단락(④)은 ‘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경창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던 엇남이가 돌연 논지를 바꾼 점이 주목된다. 그가 위의 셋째 단락에서 제시한 전략은 일종의 ‘낙인찍기 전략’인데 사실 이것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상대방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소송을 매듭지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아니었다. 의심이나 의혹을 넘어서 이경창의 혐의를 범죄 사실로 확정지으려면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했는데 상전택에는 글을 모르는 과부와 노비만 있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또 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엇남이가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 전략은 停訟 즉 소송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와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당시는 법적으로나 정황상으로 추노의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었다. 이경창의 주장을 반박하던 이전의 방식과 전혀 다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橫轉’이라 할 수 있다.²⁴⁾

조선시대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어떠한 명

22) 심경호, 위의 책, 143~147면, 참조.

23) 심경호, 위의 책, 147~150면, 참조.

24) 심경호, 위의 책, 150~151면, 참조.

분의 인력 동원도 철저히 금지했으며 잡다한 소송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소송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정송이라 했는데, 춘분 이후에는 농민들이 오로지 농사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못하게 했다. 대신 추분 이후에는 농사가 거의 끝났으므로 정지되었던 소송을 속개토록 했다.²⁵⁾ 이경창이 소송을 제기한 때는 농사철이 한창인 5월이므로 소송 제한 기간이었다. 더군다나 소송을 진행하려면 부안과 남원 및 전주를 왕래해야 했는데, 이때 마침 돌림병이 널리 퍼져 사람들의 왕래를 제한해야 하는 시기였다. 엇남이는 바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소송 중지를 요청하는 전략을 펼쳤다.

다섯째 단락(⑤)은 ‘결’이라 할 수 있는데 거듭해서 추노할 시기가 아니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상전택이 횡침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요약해서 글을 맺고 있으므로 ‘總結’이라 할 수 있다.²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부안김생원노엇남이>의 단락 구성

구분	기	승	전	결
단락	1·2	3	4	5
핵심 내용	상전택의 처연한 상황과 이경창의 주장 소개	이경창의 주장 반박	정송 시기와 전염병 강조	소송 중지 요청
수사법	排起	反承	橫轉	總結

<부안김생원노엇남이>를 접수한 감사는 엇남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

25) <停訟>, 『경국대전』 5, 刑典, “外方詞訟, 務停後務開前(以春分日爲務停 秋分日爲務開), 除十惡奸盜殺人, 捉獲付官, 逃奴婢仍役, 據奪奴婢等(註省略), 一應關係風俗侵損於人外, 雜訟並勿聽理.”

26) 심경호, 앞의 책, 151~152면, 참조.

단했다. 그래서 “지금은 추노할 시기가 아니니 사실을 조사해서 엄히 처리 하라”는 처분을 隻在官에게 내렸다. 척재관은 소송의 상대방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수령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이경창이 거주하는 남원도호부사였다. 감사가 위의 처분을 남원부사에게 내린 이유는 그로 하여금 이경창에게 소송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주어 소송을 제지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또 소송을 벌일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문까지 작성해서 부안현에 보낸 남원부의 아전과 이를 결재한 부사를 동시에 꾸짖고 그 책임을 넘기지 않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인지 이경창은 추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위 노비와 관련된 또 다른 소송 문서가 엇남이의 상전택에 전해 오지 않는 점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안김생원노엇남이>는 소송에서 수사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일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외지부의 개입

그런데 위의 탄원서를 과연 엇남이가 작성해서 제출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엇남이의 신분은 노비였는데 그가 우선 한문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의심되고 더 나아가 수사법을 동원한 숙련된 문장과 소송 전략까지 구사한 탄원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혹이 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다음의 탄원서 <道內扶安居幼學金守宗等……>을 살펴보자. 이는 김수종 등이 1705년(숙종 31) 윤4월에 전라감사에게 제출한 것이다.

① 엇드려 말씀드리건대 저희 宗家の 터전인 礪谷村은 바로 저희 증조부인 故 參判公께서 터를 잡고 은거한 곳입니다. 宗子和 宗孫이 그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지 지금 백여 년이나 되었고, 앞뒤 촌락에 집

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어 수백여 호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主山の 40步 안쪽에 사당이 있는데, 사당은 바로 참판공의 혼령을 봉안한 곳입니다. 사당 뒤에 대숲이 있는데, 대숲은 바로 宗子가 대대로 보살펴 가꾼 곳입니다.……

② 뜻하지 않게 작년 11월에 한 상놈이 밤을 틈타 몰래 와서 대숲 가운데 偷葬을 하려다가, **사당과 아주 가깝고 인가와도 멀지 않기** 때문에 놀라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구덩이를 파지 못한 채 뗏잎 위에 시신을 놓고 겨우 썩은 흙으로 덮었습니다. 이는 전후로 없었던 커다란 변고입니다.

③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크게 놀라** 이런 뜻으로 官門에 일제히 고했습니다.…… 본 고을의 수령[本官]께서 이를 듣고 크게 놀라, 때 맞춰 파내고자 해서 즉시 사유를 갖추어 감영에 論報했습니다. 그랬더니 閣下께서 처분하시기를 투장한 자를 찾아낸 후에 파웁히고 죄를 결정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함을 가슴에 안고 원통함을 참아가며** 간사한 자를 찾아내기를 기다렸지만, 시일이 지연되고 끝내 나타날 기미조차 없습니다.……

④ 그의 도적질 자취로 말한다면, 널 위에 썩은 흙과 뗏잎을 겨우 덮어놓았으니 이는 장사를 지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의도는…… 시험 삼아 (시신을) 대숲 가운데 유치했다가 뒷날 틈을 타 永쫓아려는 계책이니, 그 속셈을 생각하면 진실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도적의 음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⑤ 그 또한 나라의 법망을 도망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형적을 감추고 숨었으니,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될까 두려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출현은 묘연해 기약할 수 없으나 한 마을이禍를 당할 근심이 코앞에 임박해 상하가 놀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 상놈의 무덤을 파 옮기는 사소한 일이 백여 명이나 되는 마을 사람의 목숨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가벼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하찮은 한 놈의 시체가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파 옮기는 기한을 오래 끌어 미룬다면, 수백여 호의 큰 마을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하루도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차 도적의 무리가 금세에 뒤를 잇고, 사대부의 園林이 남아나지 못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풍속을 심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⑥ 삼가 바라건대 합하께서…… 빨리 파 읍기라는 명을 내려 악습을 바로잡으신다면, 기강과 명분이 온 道에 더욱 환하게 밝혀져 **저희들의 웅어리진 마음과 한 마을이 안도하는 즐거움**이 장차 영세토록 무궁할 것입니다.²⁷⁾

김수종이 살고 있던 반곡촌 즉 愚礪洞은 그의 증조인 金弘遠이 터를 잡아 은거한 이래 자손들의 세거지였다. 김홍원은 사후에 병조참판으로 추증되었기 때문에²⁸⁾ 집안에서 그를 참판공이라 불렀는데 주산 밑 대소에 그의 사당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해 11월 어느 날 밤에 이름 모르는 상놈 하나가 몰래 이곳에 자신의 아버지 시신을 묻었다. 이를 발견한 즉시 관에 고발해

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道內扶安居幼學金守宗等……>, 앞의 책, 98~99면, 소지 № 13. “窃伏惟念生等宗基礪谷村者, 乃生等曾祖故參判公所卜幽居也. 宗子宗孫世居其地于今百餘年之久, 前後村落, 比屋相連, 將至屢百戶之多. 主山四十步內, 有祠堂焉, 祠堂則乃參判公妥安之所也. 祠堂後, 有竹林焉, 竹林則乃宗子世世護養之處也.…… 不意昨年至月間, 有一常漢乘夜來投, 暗欲偷葬於竹林中, 而以其祠堂之至近, 人家之不遠, 故慌惻失措, 不得穿穴, 堇以腐土掩屍於竹葉之上. 盖是前後所無莫大之變也. 生等不覺骨驚而心寒, 則以此意齊告於官門. 則……本官聞卽痛駭, 欲使趁時掘出, 卽具由論報, 則閣下題辭內, 有搜得偷葬者然後, 以爲掘移定罪之教. 故生等含憤忍痛, 以待罪奸之得, 而遲延時月, 終無現出之階…… 且以渠也偷窃之迹而論之, 則堇以腐土竹葉, 覆盖於柩上, 此則非所謂葬也. 渠之志…… 故試爲留置於竹林之中, 欲後日乘間永窆之計, 究其心迹, 誠可謂難測者賊謀耳.…… 渠也自知邦憲之難逃, 掩匿形迹, 恐爲入網之鱗. 故渠之現出, 杳無可期, 而一村中, 禍敗之憂, 迫在朝夕, 上下驚惶.…… 以一常漢掘移之小事, 而比百餘村人戶之衆命, 未知孰重而孰輕耶.…… 況此么麼一漢之屍, 若以其主不出之故, 而遷就掘移之期, 則不但屢百戶大村, 騰散無日, 將見偷盜之徒, 接踵於今之世, 而士夫園林, 其無餘地矣. 此豈非傷敗風俗之甚者乎.…… 伏乞閣下…… 亟令掘移, 以規惡習, 則紀綱名分, 益復煥然於一道, 而生等隕結之懷, 一村安堵之樂, 其將永世而無窮既矣.…… 乙酉閏四月日. 幼學金守宗, 金培, 金瑄, ……”

28) 병조참판으로 추증되었을 때의 교지가 현전한다. 위의 책, 6면, 교지 № 50 참조.

서 수령의 허락 아래 파내려 했으나 감사는 투장자를 찾은 후 투총을 파내도록 지시했다.²⁹⁾ 그래서 투장자를 널리 수소문하고 오랫동안 찾아보았으나 결국 투장자의 행적이 묘연했다. 후손의 입장에서 사당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더러운 시신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김수종은 친척과 더불어 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해서 투총을 파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수종이 제출한 탄원서도 위에서 살펴본 다른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대비법, 대구법, 나열법 및 비유법 등 각종 수사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 “사당과 아주 가깝고 인가와도 멀지 않다.”와 “한 상놈의 무덤을 파 옮기는 사소한 일이 백여 명이나 되는 마을 사람의 목숨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가벼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및 “저희들의 웅어리진 마음과 한 마을이 안도하는 즐거움” 등은 대비법과 나열법 등을 통해 투총의 위치, 사당과 인가와와 거리 및 투총으로 인한 마을 주민의 피해 등을 확연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또 “그물에 걸린 물고기” 등은 비유법을 통해 투장자의 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위의 탄원서에 나타난 수사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도내부안거유학김수종등……>에 나타난 수사법

수사법	원 문
대조법	骨驚而心寒, 么麼一漢… 屢百戶大村
대비법·나열법	祠堂之至近 人家之不遠, 以一常漢掘移之小事 而比百餘村人戶之衆命 未知孰重而孰輕耶, 生等隕結之懷 一村安堵之樂
비유법	入網之鱗

문장 구성 측면에서는 “사당과 아주 가깝고 인가와도 멀지 않다[祠堂之至近 人家之不遠]”에서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지닌 ‘近’과 ‘遠’을 사용

29) 이 탄원서에서 김수종은 자신이 주이며 투장자가 객이라는 관점에서 묘사해서 한 문학적 수사법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主客法’의 논리로 탄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종린, 앞의 책, 1면, 참조.

했지만 결국은 가깝다는 표현을 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로 대비되는 骨과 心을 사용해서 ‘크게 놀랐다[骨驚而心寒]’는 뜻을 표현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한 상놈의 무덤을 파 옮기는 사소한 일이 백여 명이나 되는 마을 사람의 목숨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가벼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以一常漢掘移之小事 而比百餘村人戶之衆命 未知孰重而孰輕耶]”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대비되는 ‘一’·‘百’, ‘小’·‘衆’, ‘重’·‘輕’이 한 구절에서 어우러져 사용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소송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탄원서를 문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탄원서는 모두 6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⁰⁾ 첫째 단락(①)과 둘째 단락(②)은 ‘기’에 해당하는데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김수종의 집안이 우반동에 들어와 세거하게 된 경위와 내력 및 투장 상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사실이나 사건을 순서대로 서술했다는 점에서 ‘順起’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³¹⁾

셋째 단락은 ‘승’으로, 김수종은 투총 발견 즉시 놀라서 관에 고발했지만 투장자를 찾아낸 후 파 옮기라는 감사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투장자 색출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투장자를 찾지 못해 시신을 신성한 사당 곁에 두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감 없이 토로하고 있다. 앞 단락에서 제시된 사실을 순탄하게 이어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正承’으로 판단된다.³²⁾

넷째 단락(④)과 다섯째 단락(⑤)은 ‘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김수종은 두 가지 색다른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먼저 투장자가 땅을 파서 시체를 묻은 것이 아니라 썩은 낙엽으로 덮어놓은 채 도망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체는 투장이 아니라 ‘시체유기’라 강변했다. 이어 마을 사람들이 이 투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둘 떠난다고 전했다. 갑자기 주장

30) 김수종이 관찰사에게 제출했던 실제의 탄원서는 그 분량이 상당한데 여기에서는 논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6단락으로 요약했다.

31) 심경호, 앞의 책, 143~147면, 참조.

32) 심경호, 위의 책, 147~150면, 참조.

을 바꾸었다는 면에서는 ‘형전’,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는 긴박한 사정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긴전’이라 할 수 있다.³³⁾

끝으로 여섯째 단락(㉔)은 ‘결’에 해당하는데 투총 굴거를 허락해서 마을 주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윗 단락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종합해서 매듭을 짓고 있다는 의미에서 ‘총결’로 판단된다.³⁴⁾

〈표 4〉 〈도내부안거유학김수종등……〉의 단락 구성

구분	기	승	전	결
단락	1·2	3	4·5	6
내용	세거의 경위와 투장 상황	투장자 색출 노력	시체 유기 강조와 주민의 이거 언급	투총 굴거와 주민의 안정 요청
수사법	順起	正承	橫轉·緊轉	總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김수종이 소송의 프레임을 바꾸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이다. 감사는 김수종이 앞서 소송을 제기하자, 투장자가 나타난 후에 투총을 파 옮기도록 지시했는데 사실 이는 조선후기 산송 처분의 불문율이었다. 이러한 경우 투장자가 자수하지 않으면 투총을 파 옮길 수가 없었다. 투장자가 자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이나 감사가 투총을 파 옮기도록 허락하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 앞서 살펴본 〈남원이반산 송장〉에서 양반 이씨가 투총 주위를 파서 물을 붓고 가시를 두른 까닭은 투장자가 자수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씨의 아버지가 투옥되었지만, 이러한 불문율 때문에 조선후기 투장은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골칫거리 중의 하나였다. 심지어勒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능장자가 손수 파 옮기지 않으면掘塚이 극히 어

33) 심경호, 위의 책, 150~151면, 참조.

34) 심경호, 위의 책, 151~152면, 참조.

려왔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수종으로서는 소송의 프레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다.³⁵⁾ 그가 제시한 프레임은 투장이 아니라 ‘시체유기’였다. 투장이라 할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이 갑작스런 아버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산 주인 몰래 시신을 묻은 사건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시체유기라 하면 길러준 은혜도 모르는 놈이 사망한 자기 아버의 시체를 묻지도 않고 내버리고 도망친 사건으로 탈바꿈한다. 김수종은 일부러 이러한 인상을 주기 위해 투장자가 “구덩이를 파지 않고 그냥 덧잎 위에 시체를 올려놓은 후 겨우 썩은 흙으로 덮어버렸다[不得穿穴 堊以腐土掩屍於竹葉之上]”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조차 투장자의 음모, 즉 김수종 측에서 눈치를 채지 못하면 후에 영평하려는 간사한 속임수라고 비난했다. 배은망덕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조차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아울러 이 시체유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장차 닥쳐올 화를 염려해 하나둘 떠나고 있다며 감사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소송의 프레임을 이렇게 바꿔주고 거기에 은근한 압박의 수단으로 주민 동요까지 곁들이면 감사도 마음 편하게 투장자의 자수 후 투총 掘移’라는 판례에서 벗어나 새로운 처분을 내릴 여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소송 프레임의 전환을 과연 김수종이 생각해 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그의 친구인 朴泰觀이 보낸 편지가 참고가 된다. 이 편지는 그 내용으로 미루어 위의 탄원서가 제출되기 직전에 보내온 것으로 추정된다.

竹園의 시신을 파내는 일은 편지를 받고도 답장이 없습니다. 답장이 없어도 탄원서를 올려야 하는데 아직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趙友가 3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전라감사[湖伯]는 한 번도 답이 없습니

35) 프레임 전환에 대해서는 조지 레이코프 지음, 유나영 옮김,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삼인, 2006, 참조.

다. 대개 큰 재난 끝에 놀란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답장이 미루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영감[감사]의 政令이 자못 졸렬하여 투총 파내는 것을 기필하기 어려울 듯하니 형 때문에 매우 마음이 쓰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語勢가 모두 지극합니다. 아마 형이 스스로 쉬어 짓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어느 곳에서 훌륭한 솜씨를 가진 전문가를 찾아 대신 작성토록 했습니까?³⁶⁾

김수종은 투총을 발견하고 공적으로 관에 고발해 이를 처리하는 동시에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수령과 감사에게 청탁했다. 경화사족 출신인 박태관은 김수종에게 일이 생길 때마다 그를 돕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때에도 조씨 성을 가진 친구를 통해 전라감사에게 세 차례나 청탁 편지를 썼다. 당시 전라감사는 李震壽였는데 거둬 드는 흉년과 돌림병으로 인해 굶주리는 백성을 위한 구제책과 대비책 마련 등으로 분주해서 김수종의 산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는지 답변이 없었다. 박태관은 감사의 그러한 상황으로 보아 투총을 파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염려했다. 아울러 그는 김수종이 편지를 보내면서 동봉한 탄원서의 副本을 읽어본 후 어제가 지극히 간절하게 작성되었다고 평하고서 평소 김수종의 글 솜씨가 아니니 누구의 손을 빌려 작성했는지 묻고 있다.

이처럼 박태관의 편지를 통해서 위의 탄원서는 김수종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문가의 손을 빌려 작성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김수종은 오랫동안 과거시험에 대비해 수학하고 이후 진사시에 합격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게 올리는 탄원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투장 사건은 김수종 집안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하고 예민한 문제이기에 솜씨 좋은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처리할 수

3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375~376면, 간찰 № 621, “竹園掘屍事, 得書無報. 無亦呈書, 未得請耶. 趙友三發書, 湖伯一無答. 盖大患餘, 驚況未定, 致於稽遲. 而此令政令頗拙, 終難必其掘出, 深爲兄費念. 呈書文字, 語勢俱至. 恐兄未自易辦, 何處借(倩의 誤: 인용자주)得好手耶.”

없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에서 살펴본 사내종 엇남이의 탄원서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전문가의 손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때 종가에는 남정네가 한 명도 없고 오직 과부들만 있었다는 사실이 전문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위 편지에서 말하는 숨씨 좋은 전문가를 조선시대에는 외지부라 불렀는데 오늘날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³⁷⁾ 이들은 대개 퇴직 형리나 훈장 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³⁸⁾ 문장력이 뛰어나지만 몰락해서 다른 사람의 소장이나 써주며 빈한하게 생활하는 양반도 간혹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당에서 탄원서를 읽고 배운 평민이나 중인 또는 양반 출신의 학동들이었다. 이들은 서당에서 배운 수사법 숨씨를 발휘하여 글을 모르는 민원인의 탄원서를 작성해 역을 함을 해소시켜 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나쁜 의뢰인과 결탁해서 사실을 왜곡시켜 남의 재산을 빼앗는 등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외지부를 철저히 금지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³⁹⁾

5. 수사법의 학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소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사법에 대한 공부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소송에서 수사법이 중요한 이유는 원고가 얼마만큼 설득력 있는 표현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소송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승소하기 위해 세련된 문장으로 논리정연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기본이며 지나치지만 앓는다면 때때로 감정적 표현을 사용해

37) 한상권, 앞의 논문 참조.

38)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서당 훈장의 모습은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 271~312면, 참조.

39) 한상권, 앞의 논문 참조.

호소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감정적 표현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보다 더 강하게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⁰⁾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구사하는 세련된 표현과 절묘한 소송 전략은 하루 아침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詩를 비롯해 여러 가지 글을 지을 때 사용하는 대조, 대비, 나열, 비유 및 은유 등의 수사법은 『千字文』을 비롯해서 『推句』, 『童蒙先習』 등 서당에서 사용했던 초학자용 교재에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글을 익히면서 저절로 이에 대해 습득할 수 있었다. 『천자문』 첫머리에 나오는 ‘天地玄黃, 宇宙洪荒’은 대조법, 대비법, 나열법을 잘 보여준다. 『추구』의 ‘天高日月明, 地厚草木生, 月出天開眼, 山高地舉頭’는 거기에 의인법을 추가하고 있다. 이처럼 표현으로서의 수사법은 서당에서 한자나 한문을 배우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터득했다.

그러나 언어가 가지고 있는 多義性이나 重義性 또는 이를 활용해서 현실의 모순 등을 지적하는 감각이나 재치 등은 평소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워야 익힐 수 있었다. 서당에서 학습교재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문록』에는 이에 대한 학습 사례로 <物故狀>과 <偷牛事呈狀>이 소개되어 있다. 먼저 <물고장>을 살펴보자. ‘물고장’은 일종의 사망신고서인데 여기에서는 아내가 사망한 남편과 관련해서 제출한 탄원서이다.

삼가 애통하고 지극히 원통한 사연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남편 아무개는 오랫동안 束伍의 역을 담당하다가 어느 날 홀연히 저승에서 온 두 명의 까까머리[病魔]⁴¹⁾에게 잡혀가 저승에서 充軍되어 이승과 저승에서 두 가지 역[兩役]을 지게 되니 지극히 원통합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이승의 역을 즉시 빼어주십시오.⁴²⁾

40) 프리트요프 하프트, 앞의 책, 173~174면.

41) 춘추시대 쯔 景公이 병이 들어 秦나라의 이름난 의원을 불렀는데, 그 사이에 경공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병이 두 아이[二豎]로 변하더니 서로 얘기하기를 이번에 오는 용한 의원에게 다칠지 모르니, 育의 위와 膏의 아래에 숨어있자고 했다고 한다. '두 명의 까까머리'는 병마를 의미한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조선후기에는 평민들의 良役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양반들이 갖은 이유를 대며 군역을 기피했지만 각 지역에서 부담해야 하는 역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평민들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났다. 군역을 지는 인구가 크게 부족하자 심할 때에는 평민 한 명이 두세 가지 역을 동시에 부담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로 인한 원성이 자자했다. 평생 속오의 역을 지다 병으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시켜주지 않자 그의 아내는 이승과 저승의 兩役을 지게 되었다며 이승의 역을 즉시 빼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평민들은 죽어서도 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저승으로 가는 것조차 역으로 빚대어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이어 <투우사정장>을 읽어보자. 몰래 소를 훔쳤다고 혐의를 받는 자의 아내가 관에 제출한 탄원서이다.

삼가 말씀드립니다. 제 남편 아무개는 본디 마음을 깨끗한 시내[清河]에 씻고 밝은 더러운 물[黑水]에 담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 소를 훔쳤다는 죄목을 잘못 뒤집어졌습니다. 슬프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베 짜는 織女가 아닌데 남편이 어떻게 소를 끌고 간 牽牛이겠습니까? 옥석을 가리는 일은 전적으로 수령님의 밝으신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통촉하시어 소를 끌고 간 죄를 직녀의 남편에게 물으시고 저의 남편이 깨끗한 마음을 잃는 데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⁴³⁾

위 탄원서를 올린 사람은 견우와 직녀의 전설과 ‘牽牛’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중의성을 활용해서 소를 훔쳐 끌고 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42) <物故狀>, 『수문록』, 56면, “右謹陳哀痛至寃情由段, 矣夫某積年束伍擔當矣. 某日忽二豎捉去, 而爲冥府充丁, 生死兩役, 極爲寃枉. 伏望陽界之役, 卽爲頒給事.”

43) <儉牛事呈狀>, 『수문록』, 57면, “右謹陳矣. 夫某素是心欲洗於清河, 足不涉於黑水矣. 不意今者, 誤蒙儉牛之罪. 噫嘻悲哉. 妾非織女, 則夫何牽牛乎. 玉石之別, 都係於案前主明鑑. 伏乞洞燭, 使儉牛之罪, 歸於織女之夫. 不至矣夫毋失欲洗清河不涉黑水之心爲白只爲.”

을 변호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이 직녀가 아니므로 남편은 건우가 될 수 없기에 소를 끌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탄원서는 조선시대 여류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玉峰李氏(?~1592)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것의 異本일 가능성이 있다. 李睟光(1563~1628)의 주장에 의하면, 옥봉이씨는 남편이 소 도둑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이웃 아낙의 하소연을 듣고서 대신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말미에 “제가 직녀가 아닌데 낭군이 어찌 건우이겠습니까?[妾身非織女 郎豈是牽牛]”라는 구절을 써넣었다. 탄원서를 살펴본 수령은 이를 읽고 크게 탄복해서 아낙의 남편을 곧바로 석방해 주었다고 한다.⁴⁴⁾ 옥봉이씨가 쓴 시 중에 위 구절이 포함된 〈爲人訟冤〉이 전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수광의 주장이 사실이며 위 탄원서가 그녀가 쓴 것과 유사한 이본일 가능성이 높다.⁴⁵⁾

이처럼 언어에 대한 감각과 재치를 활용해서 실제로 탄원서를 작성한 사례가 용례집에 하나 더 소개되어 있다. 산송 제기 후, 현지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저질러졌는데 『能捉冤情所志』에 수록된 〈山訟狀〉에서는 이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

가만히 엎드려 아웁니다. 새는 그릴 수 있지만 그 소리는 그릴 수 없으며 꽃은 그릴 수 있지만 그 향기는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병풍 위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어찌 진정한 새소리일 것이며 종이 위에 그려진 꽃향기가 어찌 진짜 꽃내음이겠습니까? 산소의 도형도 이와 같습니다. 산도에 그려진 산등성이[岡]나 언덕[陵] 등은 유사하게 그릴 수 있겠지만 멀고 가까운 거리와 緊歇한 형세는 붓으로 묘사하기 어렵습니다. 또 산의 형상은 하늘이 만든 것인데 비해 도형은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그렸다 한들 하늘이 만든 것에 전혀

44) 이수광, 〈妓妾〉, 『지봉유설』 권 14, “趙瑗妾李氏能屬文, 有一村婦其夫以盜牛被囚, 李氏書其狀尾曰, 妾身非織女, 郎豈是牽牛. 太守見而奇之, 竟解放.”

45) 시의 전문은 “洗面盆爲鏡, 梳頭水作油, 妾身非織女, 郎豈是牽牛.”이다.(김지용, 『역대여류한시문선』, 대양서적, 1978, 157면.) 작자가 중국인이라는 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李德懋, 〈天涯知己書〉筆談, 『靑莊館全書』 63권, 참조.

미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지만 사람은 사사로움이
이 개입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⁴⁶⁾

『능착원정소지』 편집자는 이 산송장을 경상도 咸陽 松湖에 사는 이씨 성을 가진 17세의 아동[李童]이 左道의 軍威 사람과 산송을 벌여 패소하자가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학동들의 초학 교재인 『추구』에 나오는 “꽃은 웃어도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새는 울어도 눈물을 보기 어렵다.[花笑聲未聽 鳥啼淚難看]”는 구절을 활용해서⁴⁷⁾ 산도를 그린 구실아치들이 사심을 품고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엉터리로 한 결과 실제적 진실과는 영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을 에둘러 고발했다.

그런데 이 탄원서는 현지 조사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비리에 대해 고발한 그 어느 소장보다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그 이유는 도형을 그리는 일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기에 사사로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내리는 수령의 처분이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물고장>과 <투우사정장>과 같이 직설적으로 비리를 고발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탄원서보다도 호소력이 큰 것은 비유법과 반복법 및 대구 등 수사법을 적절히 동원해 글을 잘 구성했기 때문이다.

46) 『능착원정소지』, 64면, “竊伏以鳥可畫也, 而聲不得畫焉, 花可繪也, 而香不得繪焉. 則聽於屏上者, 豈聞鳥之眞聲乎, 玩於紙末者, 豈知花之眞香乎. 山之圖形, 亦猶是焉. 曰岡曰陵, 惑得其髣髴然, 遠近緊歇之勢, 難以筆形. 且夫山形者天作也, 圖形者人作. 人作雖妙, 萬不及天作. 況於天無私而人有狹(挾의 誤: 인용자주)也云云. (此咸陽松湖李童年十七歲作也. 左道軍威人, 以山訟落課(科的 誤: 인용자주)而得此狀.)”

47) 함현찬, 『추구·계몽편』, 전통문화연구회, 1999, 64~65면.

6. 결 론

수사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자가 생긴 이래 매우 중시되어 왔다. 동양의 경우, 고대로부터 수사법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논리학을 중시한 法家나 道家는 말할 것도 없고 儒家까지도 수사법을 매우 중시했다. 물론 공자가 『논어』의 〈衛靈公〉에서 “말이란 통하면 그뿐이다.[辭達而已矣]”고 했고 또 〈學而〉에서 “그렇듯하게 꾸민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듯이 꾸민 반질한 얼굴에는 인이 적다! [巧言令色 鮮矣仁]”고 한 점을 보면 수사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겉으로 보면 말을 꾸미는 것을 크게 경시하고 경계한 듯하지만 ‘인이 적다’ 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오히려 수사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는 『春秋左傳』에서 “말은 꾸미지 않으면 오래토록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言之無文 行而不遠]”라고 주장해 수사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⁴⁸⁾

서양의 경우에는 수사법은 우선 설득의 기술로 간주되었다.⁴⁹⁾ 실제로 수사법을 동원하지 않고 상대를 설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아가 수사법은 표현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분석의 도구였다. 수사적인 표현을 동원해 거짓을 말하는 경우, 이를 분석하는 데에도 수사법이 동원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법정연설문을 써주던 사람들이 때로는 양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법정연설문을 써주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⁵⁰⁾ 따라서 수사법은 창이자 방패이다.

그러한 면에서 필자는 탄원서를 읽는 방법과 쓰기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는데⁵¹⁾ 수사법은 단지 소송의 餘技 즉 승소를 위한 技巧에 불과한

48) 심경호, 앞의 책, 54~59면.

49) 리처드 토이 지음, 노승영 옮김, 『수사학』(교육서가, 2015), 7~15면.

50) 프리트요프 하프트, 앞의 책, 23~25면.

51) 전경목, 앞의 논문 참조.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사실에 접근하고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판단의 수단이
자 도구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이 수사법을 이용한 탄원서 분석의 시발점이
되고 아울러 한문학이나 법수사학과와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탄원
서에 대한 이해의 폭이 크게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07월 20일(목요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08월 22일(화요일)부터 09월 11일(월요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09월 12일(화요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한우근 등, 『역주 경국대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김지용, 『역대여류한시문선』, 대양서적, 1978.
-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고전번역원.
- 이수광, 『지봉유설』, 한국고전번역원.
- 정구복, 『부안김씨우반고문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필자 미상, 『능착원정소지』, 개인소장.
- 필자 미상, 『수문록』, 개인소장.
- 함현찬, 『추구·계몽편』, 전통문화연구회, 1999.
- 김옥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2.
- 리처드 토이 지음, 노승영 옮김, 『수사학』, 교유서가, 2015.
-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00.
- 심경호, 『개정증보판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 李鍾麟, 『文章體法』, 普書館, 1913.
-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
- 조지 레이코프 지음, 유나영 옮김,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삼인, 2006.
- 프리트요프 하프트 지음, 김성룡 옮김, 『법수사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 이현호, 「朝鮮後期『史記』批評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전경목, 「서당학동이 읽은 필사본 ‘用例集’의 내용과 특징」, 『한국고전연구』 3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 전경목, 「조선후기 학동들의 탄원서 학습」, 『전북사학』 49, 전북사학회, 2016.
- 전경목, 「조선후기에 서당 학동들이 읽은 탄원서」, 『고문서연구』 48, 한국고문서학회, 2016.
- 정우봉, 「한국 수사학사에 있어 “수사” 담론과 그 맥락」, 『민족문화연구』 4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 한상권, 「조선시대 소송과 외지부」, 『역사와 현실』 69, 한국역사연구회, 2008.

ABSTRACT

**Writing petition and utilization of rhetoric in late-Chosun era :
Comments on point of contact between paleography and
Chinese literature**

Chon, Kyoung-mok*

New trend had been appeared since late eighteenth century when was estimated to educate to write petition in the village schools. That was writing petition with a variety of rhetoric reflecting the education of Chinese had been expanded to the classes beside noblemen and the perception of right or possession had been settled up to the countryside communities. To prove these, two aspects are reviewed on multiple textbooks and real petitions. First thing is to understand what vocabularies and words were used and what rhetoric techniques were applied to express the position or feeling of the persons to claim petition. Since it is focused mainly on the expression, it is called as ‘rhetoric as the expression’ in this article. The next thing is to investigate how overall writing was organized logically so as to clearly deliver the intention and the purpose of petition. It is called as ‘rhetoric technique as the strategy of lawsuit’ in terms of strategic writing organization so as to deliver the intention of the person who claimed the petition sufficiently. In addition, it was called as Oejibu that was the person to write the petition to assist the plaintiff or the defendant using rhetoric, or on behalf of them. The evidences of their

*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kmok@aks.ac.kr

involvements will be reviewed in the real petitions. Then, it will be reviewed how they learned rhetoric in the village schools.

Key Words : petition, rhetoric, village school, textbook, Oejibu, figure of speech, metonymy, four steps in composition (the introduction, the development of the theme, conversion, and summing up)